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

- 관련 근거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」 제5조
- 추천 의뢰 부서: 일자리지원과-18225호(2022.09.05.)
- 추천 인원: 2명

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(안)

- 위원회 구성: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
 - 위원장: 위원 중 호선
 - 위 원
 -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
 - 구의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
 - 근로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 -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- 임 기: 2년(연임 가능)
- 역 할: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
 -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
 -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
 -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
 - 그 밖의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. 추천자(안)¹⁾

- ① 김 승 수 의원
- ② 장 정 희 의원